

#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태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2월 1일

발 의 자 : 이태성, 유 용, 이광호,  
채인목, 김달호, 김정태,  
황규복, 강동길, 김화숙,  
이병도, 김상진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빛공해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, 공공기관의 야간 조명 운영시간 및 조도를 제한하는 한편, 빛 방사허용 기준을 조례상에 명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공공청사의 장이 「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(가로등, 보안등 및 공원등, 장식조명)설치·관리 권고기준」에 따라 “주거지 사이의 거리” 및 “지역특성” 등을 고려하여 빛공해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함.(제24조제2항 중 “보안성”을 “보안성, 주거지 사이의 거리, 지역특성”으로 한다.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보안성”을 “보안성, 주거지 사이의 거리, 지역특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점등 및 소등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공공청사의 장은 벽부등 및 청사주변에 설치한 조명에 대하여 야간 환경과 <u>보안성</u> 등을 고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24조(점등 및 소등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보안성, 주거지 사이의 거리, 지역특성</u>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제2항에서 공공청사의 장은 벽부등 및 청사주변에 설치한 조명에 대해 ‘주거지 사이의 거리’ 와 ‘지역특성’ 을 추가로 고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(제1항제2호에 해당)

- 기존에는 ‘야간 환경’ 과 ‘보안성’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었으나, 여기에 ‘주거지 사이의 거리’ 와 ‘지역특성’ 을 추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점등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반대로 점등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
  - 즉 점등시간이 줄어들 경우 전기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, 증가하는 경우를 감안해 미첨부사유서로 검토
- 다만 각 공공의 청사 입지 조건과 주거지 조건이 다양하여 이를 일반화시켜 늘어나는 점등 시간을 추정하고, 늘어난 점등시간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, 미첨부사유서(제2호)에 해당된다고 판단함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     황훈

예산분석관     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